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2001. 8. 2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01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1. 8. 22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가. 제안이유

- 관계법령의 개폐 및 다른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 재조정

- 중복 및 폐지된 규정 삭제
 - 이의신청 심의
 -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각종 가격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 가정의례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신규사항 추가
 - 보안심사
 - 정보공개 심의사항

○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

- “실·과장” ⇒ “과장”
-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심의”로 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상혁)

○ 충청북도중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중복 또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일부 불 부합한 조항 “실·과장”을 “과장”으로,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심의”로 개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명하여 중복 폐지된 이의신청 심의, 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각종 가격과 요금조정에 관한사항,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삭제하고,

신규항목으로 보안심사, 정보공개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중요부분이 대부분 개정되어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나 부분개정으로 처리한 사유와

동 조례 제2조 중 단서조항은 현실적으로 대행하는 위원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현실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제2조 제2항 중 단서조항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1. 8. 22.

제 안 자 : 유주열 의원외

1. 수정이유

현실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제2조 제2항 중 단서조항 삭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구성) 제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2조(구성) ①(생략)</p> <p>②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p> <p><u>다만,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제2조(구성) ①(생략)</p> <p>②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p> <p>(삭제)</p>